

[기능] 경영기본

[규정]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규정

[규칙]

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제 2 장 구 성

제 2 조 (구성)

제 3 조 (위원장)

제 4 조 (해임)

제 3 장 운 영

제 5 조 (회의의 소집)

제 6 조 (소집절차)

제 7 조 (결의방법)

제 8 조 (부의사항)

제 4 장 기타사항

제 9 조 (의사록)

제 10 조 (간사)

제 11 조 (경비)

제 12 조 (규정의 개폐)

부 칙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HL홀딩스(이하 “회사”라고 한다)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상법 제393조의 2에 의거 설치하기로 하고 그 구성, 조직 및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2 조 (구성)

위원회는 2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포함하며,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
제 3 조 (위원장)

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위원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해임)

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서 가능하며, 이사회는 해임,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지체없이 총원을 해야 한다.

제 3 장 운 영

제 5 조 (회의의 소집)

위원회는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.

제 6 조 (소집절차)

1. 위원회는 위원장이 5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단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2. 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 상법 제542조의 6 제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자를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결의방법)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제 8 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외이사후보자의 추천
2. 기타 사외이사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4 장 기타사항

제 9 조 (의사록)

1.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2.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,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3. 의사록 원본은 이사회 간사부서에서 보관한다.

제 10 조 (간사)

1.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.
2. 위원회 간사는 경영기획담당 임원이 되며,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1 조 (경비)

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
제 12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제정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.